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 미 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부지 매입

구미지역 학교급식, 복지급식 및 기업체급식을 위한 물류시설을 건립하여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증대와 지역 먹거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부지 매입

○ 위 치 : 고아읍 이레리 514-17 외 20필지

○ 대 상 : 토지 19,119m² ※ 기준가격 : 1,368.5백만원(공시지가)

○ 매 입 비 : 3,121백만원(감정평가금액)

○ 세부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비 고
부지 매입비	3,121	500	2,621	시비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주요내용

- 학교급식, 복지급식, 기업체급식을 위한 창고 및 선별시설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구미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계획수립 용역 착수 : '21. 5. 6.
- 2022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 : '21. 6. 25.
-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본신청 : '22. 6. 24.
-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서면평가 : '22. 7. 20.
-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발표평가 : '22. 8. 11.
-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 '22. 8. 22.
-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사업비 심의 : '22. 8. 30.
-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계 및 건립 : '23 ~ '24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21건	19,119	1,368.5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1건	19,119	1,368.5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건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건 건		
처분	계		건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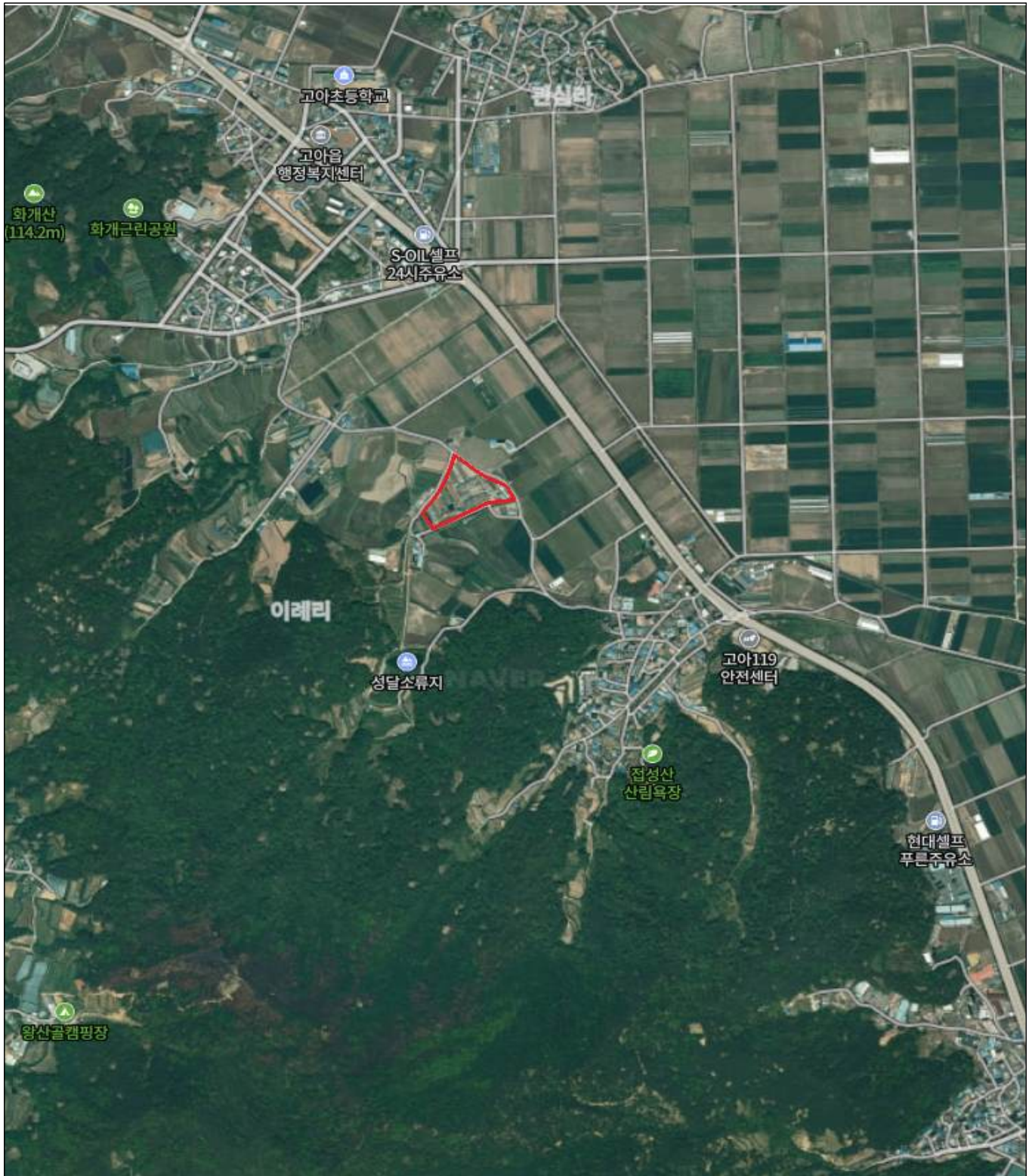
(단위 : m²,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m ²)					
총계		21필지	19,119	1,368.5				
취득	토지	이레리 39-2	258	19.1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RC) 전립 부지 매입	정태연	매입
	"	이레리 39-33	263	17.7	"	"	정태연	"
	"	이레리 40	1,435	98.2	"	"	정태홍	"
	"	이레리 40-3	231	17.9	"	"	정태연	"
	"	이레리 41	420	28.7	"	"	정태홍	"
	"	이레리 41-1	1,114	76.2	"	"	정태홍	"
	"	이레리 42	589	40.3	"	"	정태홍	"
	"	이레리 42-1	1,239	84.7	"	"	정태홍	"
	"	이레리 43-2	374	27.2	"	"	정태연	"
	"	이레리 231-16	856	55.7	"	"	정태홍	"
	"	이레리 231-21	73	4.7	"	"	정태연	"
	"	이레리 514-11	2,029	138.8	"	"	정태홍	"
	"	이레리 514-12	1,230	84.1	"	"	정태홍	"
	"	이레리 514-13	464	29.6	"	"	정태홍	"
	"	이레리 514-14	2,192	179.5	"	"	정태연	"
	"	이레리 514-15	913	66.2	"	"	정태연	"
	"	이레리 514-16	1,415	115.9	"	"	정태연	"
	"	이레리 514-17	735	53.3	"	"	정태연	"
	"	이레리 514-18	578	41.9	"	"	정태연	"
	"	이레리 514-19	855	61.9	"	"	정태연	"
	"	이레리 514-26	1,856	126.9	"	"	정태홍	"

위 치 도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부지

○ 소재지 : 구미시 고아읍 이레리 514-17 번지 외 20필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 11. 생략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

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건 호
	담 당	김 은 화
	담 당 자	류 경 화 (480-5072)